

◆ 한 · 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

이상우 선임연구원

1. 검토 배경

효율적 규제 및 감독을 통한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수탁자 관련 제재제도를 비교 및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수탁자 관련 제재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함

- ☐ 퇴직연금제도에서 수탁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신의 재량에 의해 운영·관리하게 되므로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함.
 - 근로자에게 모든 운용책임이 주어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퇴직연금자산 운용 관련자의 도덕적 의무 및 책임여부가 수급권 보장 여부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 자산운용 규제완화 추세에 대비하여 수탁자의 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재량권 남용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에서 수탁자 책임의 명확화가 요구됨.
 -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수탁자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수익자의 운용 선택폭이 확대되는 반면,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리스크는 그 만큼 증대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인 금융제도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이 수탁자에게 요구되므로, 수급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명확하고 적절한 제재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수탁자와 관련된 법률상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제도를 상호 비교한 후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차원에서 개

선과제를 검토함.

-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퇴직연금 제재제도의 법률적 요건으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탁자의 범위와 책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법률 위반 시 주무부처가 취할 수 있는 제재제도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비교대상 법률은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확정각출형연금법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계약형¹⁾ 중심의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의의가 큼.
- 다음으로 제3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퇴직연금법에서 정한 수탁자 책임과 위무, 금지행위를 살펴보고, 각각의 행위에 대한 법률 위반시 어떠한 제재조치가 부과되는지 법률의 형벌 및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제재제도의 비교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제재제도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법률상 제재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수탁자 책임과 제재제도의 유형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수탁자를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자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 및 형벌적 제재 등을 취할 수 있음.

가. 수탁자의 범위

-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법률에서 명시한 퇴직연금의 거래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제재조치의 대상이 됨.
- 퇴직연금제도에서 위탁자는 근로자이며, 모든 연금의 운영과 감시에 대한 책임

1) 금융기관에 완전 위탁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과 사용자와의 금전계약에 의해 계약이 좌우될 수 있어 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됨.

을 지는 집행기관(governing body)과 운영자는 수탁자에 해당됨.

- 집행기관이나 운영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관리하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거나 자산을 통제하는 경우 수탁자에 해당됨.

-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재량권을 갖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위원회 대표, 사용자, 금융회사 등 매우 다양하며 포괄적임.

-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수탁자의 범위를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로 제한하는 등 좁은 의미로 해석함.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산운용을 의뢰한 사용자, 운용 및 자산관리기관 등을 수탁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반면, 수탁자 개념이 태동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에 고용되어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펀드매니저를 수탁자에 포함시키는 등 수탁자의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함.

<표 1> 수탁자 범위 및 책임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수탁자 범위	포괄적으로 규정 [지명수탁자, 신탁수탁자, 외부전문가(펀드매니저, 연금컨설팅), 사용자 등]		제한적 규정 사용자, 운용 및 자산관리기관, 연금컨설턴트 등	제한적 규정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운용 및 자산관리기관)
책임	충실의무, 주의의무, 분산투자자의무, 문서준수의무 등 4대 의무			

나. 수탁자 책임

- 수탁자 책임은 수탁자가 행사하는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신탁계약에서 유래한 개념임.

- 신탁계약에서 수탁자는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할 것(충실의무), 의무를 신중하게 수행할 것(주의의무), 연금제도 규정을 준수할 것, 분산투자할 것, 합리적인 경비를 집행할 것 등과 같은 수탁자 책임을 짐.

- 수탁자 책임과 금지행위는 수탁자의 자율적 재량권 남용으로부터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률에서 명확히 명시되며, 위법 행위시 주무부처가 행정적 또는 형벌적 제재조치를 부여하는 등 일반적인 계약관계보다 엄격히 운영 및 관리됨.
 - 퇴직연금제도에서 수탁자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내포하므로 가입자 또는 수익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에게는 연금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중요한 책무와 도덕성을 필요로 함.
 -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계약형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는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연금자산의 운영 및 관리가 금융회사에 완전 위탁되므로 연금자산을 기금이 관리하는 기금형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됨.
- 우리나라는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 등과 같은 수탁자 책임의무 규정을 두어 법률위반 시 벌칙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일본은 영·미식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Prudent Man Rule)에 입각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확정급여기업연금법 및 확정각출형연금법은 연금제도 내부자 이외에 운용기관의 수탁자 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였음²⁾.
 - 미국의 ERISA법은 충실의무, 주의의무, 분산투자 의무, 문서준수의무를 수탁자 책임으로 규정하였으며, 판례법 전통이 강한 영국은 1995년 연금법 개정시 수탁자 책임을 규정에 명시하였음.

다. 제재제도의 유형

- 근퇴법은 사용자 및 사업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노동부 및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행정적 제재와 형벌적 제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행정적 제재

- 행정적 제재제도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에 따라 법률상 의무

2) 土浪 修, 『年金法制における運用機関の受託者責任と生命保険社』, 日生基礎研究所, 2002.9, p.80 참조

위반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의미함.

- 행정적 제재조치는 영업상의 제재, 개인의 신분상 제재, 금전상 제재로 구분되고 제재대상에 따라 기관에 대한 제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으로 구분됨.

- 근퇴법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사업자가 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근퇴법 §18).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받은 때, 등록내용 또는 등록조건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기간 중 그 영업을 한 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또는 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 수급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요구,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형벌과 금전적 제재

☐ 형벌상의 제재는 주부무처 등이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과 같은 형사조치와 사법당국이 기소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 및 결정하여 처분할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 양벌형 있음.

- 양벌형은 범죄 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벌을 말함.

☐ 금전적 제재는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결정·부과하는 벌금과 구별되며,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형과 법률의 이행 확보를 위한 질서법의 성격을 갖는 과태료 등이 있음.

- 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주무부처가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를 말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능함.

- 과태료는 금전적 벌칙의 일종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도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칙임.

3. 한국과 일본의 수탁자 책임 및 제재제도

우리나라는 근퇴법상 사용자의 법률 위반시 형벌적 제재가 가능하나 퇴직연금사업자의 형벌적 제재는 부재하며, 일본은 DC법상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형벌적 제재가 가능한 것이 특징임.

가. 한국의 수탁자 책임과 제재제도

- 근퇴법상의 퇴직연금 수탁자 책임은 기본적인 책무와 금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자의 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정부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음(<표 2 참조).

<표 2> 근퇴법상의 수탁자 책임 관련 사항

구 분	수탁자 책임 관련 사항		관련근거
사용자	· 퇴직금 기한내 지급 의무 (§4) · 근로자 교육 실시 의무		§19 등 (사용자 책무)
	금지 의무	· 사업안 차등 금지 (§4) · 근로자 동의 위반 금지 (§4) · 근로자 불이익 행위 금지 (§4) · 권리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7) · 다른 목적으로 계약 체결 금지 · 퇴직연금제도 운영저해 금지	
퇴직연금사업자	·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20)		§20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책무)
	금지 의무	· 자산관리계약 체결 거부 금지 · 가입자 손실보전 금지 · 특별이익 제공 금지 · 가입자 정보 제공 금지 · 특정한 운용 방법 제시 금지	
정 부	세계 등 지원방안 강구 의무		§21 (정부의 책무)

- 제재제도는 사용자에 대한 형벌적 제재제도는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법률 위반 시 형벌적 제재제도는 부재함.
- 사용자의 법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벌적 제재가 가능하나, 퇴직연금사업자의 법률 위반시 제재가 부재함.
- 사용자 책무에는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시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입자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가입자 교육의무(필요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 실시위탁가능)와 퇴직금 기한내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표 3>, <표 4> 참조).
- 또한, 사용자는 연금 사업안을 차등하는 행위, 근로자 동의 위반, 근로자의 불이익 행위 금지 위반,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료의 고의·거짓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시 벌칙 규정이 부재함.

<표 3> 사용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Ⅰ): 징역 또는 벌금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충실의무	퇴직금 기한내 지급 위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기한(14일 이내)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9)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1)
	사업안의 차등 금지 위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설정시 법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4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2)
	근로자 동의 위반	사용자가 제도 선택·변경시 노동조합원 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4③)	5백만원 이하의 벌금 (§33)
	근로자 불이익 행위 금지 위반	사용자가 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입장에서 불이익하게 변경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4④)	

<표 4> 사용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Ⅱ): 과태료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충실의무	교육 실시 위반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9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5)
	다른 목적으로 계약 체결	사용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19②)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5)
문서준수의무	자료의 고의·거짓 작성	사용자가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19②)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퇴직연금취급실적 제출 의무, 이익제공 사전약속금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표 5> 참조).

- 특히, 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범위 이외에 취득정보사용금지 의무, 특정운용방법제시금지 의무가 존재함.
- 업무범위 이외에 취득정보사용금지 의무는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정보를 퇴직 연금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특정운용방법제시금지 의무는 자기 또는 가입자 이외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임.
- 또한, 계약체결 거부행위, 계약체결 강요행위, 근거 없는 판단 제공행위, 운용지시 정보유출 행위, 손실부담 행위, 특별이익 제공약속, 개인정보, 유출행위 위반,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위반, 취급 현황 미제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정부의 책무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5> 퇴직연금사업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 과태료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충실의무	계약 체결 거부	사업자가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20②)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35)
	계약 체결 강요 행위	사업자가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20)	
주의의무	근거 없는 판단 제공행위	사업자가 사용자·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20②)	
	목적 이외에 정보 이용 행위	사업자가 사용자·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20②)	
	운용지시 정보 유출 행위	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0③)	
	손실 부담 행위	운용관리기관이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20③)	
	특별이익 제공약속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20③)	
	개인정보 유출 행위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의 성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20③)	
분산투자 의무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 위반	운용관리기관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운용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20③)	
법령준수의무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위반	사업자가 법, 명령 또는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0①)	5백만원 이하 의 과태료(§35)
	취급 현황 미제출	사업자가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을 사용자·노동부장관·금융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19②)	

나. 일본의 수탁자 책임과 제재제도

- ☐ 일본 확정각출형연금법에서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하고 폭넓은 형벌적 제재조치가 존재하는 등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것이 특징임.
- ☐ 퇴직연금 수탁자 책무로는 사업주의 책무, 운영관리기관의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6> 확정각출형연금법상의 수탁자 책임 관련 사항

구 분	수탁자 책임 관련 사항		관련근거
사용자	· 사업주의 부금 납부 (§21) · 근로자 교육실시 의무 (§22) · 운영관리기관에 통지의무 (§16)		§22 등 (사업주 책무)
	금지의무	· 근로자 동의 위반 금지 (§3) ·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 위반 (§51) · 규약 변경시 미신고, 허위신고 (§6①) · 개선 명령 이행 위반 (§52①) ·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 (§149①) 등	
퇴직연금 사업자	·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99①)		§99 (퇴직연금사업자의 행위준칙)
	금지의무	· 중요사항 미고지 · 부실고지금지 (§100④) · 가입자 손실보전 금지 (§100①) · 특별이익제공 금지 (§100②) · 미등록 부정등록 행위 금지 (§88①) · 명의대여 금지 (§95) ·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기재 (§102) · 열람거부 또는 허위기재 (§96) 등	
정 부	세제 등 지원방안강구 의무 (§86)		§87 등 (지도 및 조언)

- 사용자 책무에는 투자교육 제공, 근로자 동의, 업무 위탁 등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함.
 -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주체인 사용자는 퇴직연금 시행에 앞서 노사간의 합의를 얻은 규약을 마련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업무를 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적립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기관과 계약하며 기여금은 사용자가 각출, 가입자 등이 그 운용의 지시를 함.
- 사용자는 가입자 등이 적절한 자산운용을 지시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투자교육을 실시하는 책무를 지고 있음(<표 7> 참조).
 - 사용자에 대한 행위규제에는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 위반, 규약 변경시 미신고·허위신고, 기한내 미보고 및 허위보고, 개선 명령 및 이행 위반, 규약변경 통지 위반, 기록관리에 정보 미통지, 기한내 신고 위반 등이 있음.
 -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50만엔 이하의 벌금, 20만엔 이하의 과태료, 1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운영관리업무란 퇴직연금 기록관련 업무(가입자에 관한 기록, 운용지시의 정리와 자산관리기관에의 통지, 급부의 재정) 및 운용관련업무를 선정과 가입자에게의 제시,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임.
 - 사용자는 운영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운영관리기관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운영관리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투자교육에 대해서도 운영관리기관으로의 위탁이 가능함.
- 운영관리기관에 대한 행위규제에는 미등록 영업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명의대여 금지, 손실부담의 금지위반 특별이익 제공 행위, 추가적 이익제공 금지위반, 중요사항 미고지·부실고지, 업무정지 명령 후 업무영위 행위 등이 있음(<표 8>, <표 9> 참조).

<표 7> 사용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 징역, 벌금, 과태료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법령준수 의무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 위반(기업)	기업이 주무장관에게 퇴직연금 실시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임점검사 시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51)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120)
	규약 변경시 미신고, 허위신고	사업주가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한 때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6①)	20만엔 이하 의 과태료 (\$123)
	개선 명령 이행 위반	주무장관이 사업주에게 퇴직연금 상황에 대해 보고를 징구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할 경우(사업주가 법령, 규약이나 주무장관의 처분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주의 연금 운영이 현저히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그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위반할 시(\$52①))	
	규약 변경 통지 위반	IRA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주무장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58①)	
	기한내 미보고 및 허위보고	사업주가 퇴직연금 관련 보고서를 기한내 작성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할 경우(\$50)	
	기록관리에 정보 미통지	사업주가 퇴직연금 규약의 승인을 받을 때 기록관리기관에게 기한내 법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16①)	10만엔 이하 의 과태료 (\$124)
	기한내 신고 위반	사업주가 퇴직연금규약의 승인 효력을 상실할 경우 주무장관에게 IRA가입자 소정의 사항을 연합회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47)	
문서준수 의무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	운영관리업무를 하는 사업주가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장부서류의 작성이나 보존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장부서류를 작성할 경우(\$49)	20만엔 이하 의 과태료 (\$123)

<표 8> 퇴직연금사업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1): 징역 또는 벌금형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충실의무	중요사항 미고지, 부실고지	운영관리기관이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해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의 중요사항에 대해 고의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을 고지하는 행위 등 (§100④)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119)
	손실부담의 금지위반	운영관리기관계약을 체결시 상대방에게 가입자 등의 손실의 전부·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할 경우 (§100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118)
주의의무	특별이익 제공 행위	운영관리계약시 상대방에게 가입자·거래 상대방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 경우 (§100②)	
	추가적 이익제공 금지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업무상 발생한 가입자 등의 손실의 전부·일부를 보상하거나 가입자 등의 이익에 추가하기 위해 가입자·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제3자를 시켜서 제공하는 행위 (§100③)	
법령준수의무	미등록 영업행위	주무장관의 등록을 받지 않고 운영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88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운영관리업을 부정한 수단으로 주무장관의 등록을 받은 경우 (§88①)	
	명의대여 금지	운영관리업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운영관리업을 하게 할 경우 (§95)	
	업무정지 명령 후 업무영위 행위	주무장관으로부터 운영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에 반하여 운영관리업을 영위할 경우 (§104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119)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운영관리기관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 관련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89①)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120)

<표 9> 퇴직연금사업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II): 징역, 벌금, 과태료

의무 구분	위반 사항	위반 요건	제재 내용
법령준수 의무	변경신고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등록신청서 변경 사항을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92①)	50만엔 이하의 벌금(\$121)
	운영개선 명령위반	주무장관은 운영관리기관의 업무에 있어 가입자 등의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업무의 운영개선을 할 수 있는데, 운영관리기관이 이 명령에 위반하 는 경우 등(\$104)	
	기한내 신고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합병, 파산 등으로 등록 효력을 상실할 경우 주무장관에게 신고하 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66①)	10만엔 이하의 과태료(\$124)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주무장관에게 그 업무상황 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임 점검사 시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10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120)
문서준수 의무	영업소 표식 비치 위반	운영관리기관이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시행령에서 정한 양식의 표식 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94①)	50만엔 이하의 벌금(\$121)
	의무자 외의 자가 표식 게시	운영관리기관 이외의 자가 운영관리기관에 관한 표식 또는 유사 표식을 게시할 경우 (\$94②)	
	열람거부 또는 허위기재	운영관리기관이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 라 그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류를 가입자 등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허 위기재가 있는 서류를 비치하거나 가입자 등에게 열람시킬 경우(\$96)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	운영관리기관이 그 업무의 장부서류의 작 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장부 서류를 작성할 경우(\$101)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기재	운영관리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한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10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120)

- 또한, 등록신청서 허위 기재, 장부 미보존 및 허위 작성,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 기재,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 위반(운용관리기관), 변경 신고 위반, 영업소 표시 비치 위반 행위 등이 있음.
- 운영관리기관이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20만엔 이하의 벌금, 10만엔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함.
- 확정각출형연금법은 자산관리기관에 충실의무를 부여하여 법령 및 자산관리계약을 준수하고 기업형 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44).

4. 한국과 일본의 수탁자 책임 제재제도의 비교

한국은 수탁자의 법률 위반시 형벌 및 금전적 제재의 양적인 수준이 일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으며, 낮은 수준의 금전적 제재와 제재제도의 다양성 부족으로 퇴직연금제도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가. 양적 비교

- 한국과 일본의 제재제도를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률 의무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적 또는 금전적 제재가 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은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법률 의무자에 대해 총 26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있으나 한국은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8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 한정됨.
-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병과형: 일본은 12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병과형의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에 한국은 4개의 병과형에 불과함.
 - 벌금형: 일본은 6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규정이 존재하나 한국은 벌금형의 규정이 없음.
 - 과태료: 한국은 14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존재하나 일본은 8개의 과태료 규정이 있음.

- 양벌형: 일본은 18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형 규정이 존재하나 한국은 4개의 양벌형 규정이 있음.

<표 10> 수탁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의 비교: 양적 비교

구분	일본(②)	한국(①)	차이(①-②)
징역 또는 벌금형	12개 행위	4개 행위	- 8개
벌금형	6개 행위	-	- 6개
과태료	8개 행위	14개 행위	+ 6개
양벌형*	18개 행위	4개 행위	- 14개

주 : *는 행위자 처벌 이외에 개인·법인에게도 벌금 부과

- 사용자의 제재제도 측면에서 한국은 사용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벌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은 사용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4개의 징역 또는 벌금의 병과형과 1개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으나, 일본은 1개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병과형을 부여하고 7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표 11> 사용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의 비교

구분	일본(②)	한국(①)	차이(①-②)
징역 또는 벌금형	1개 행위	4개 행위	+ 3개
벌금형	-	-	-
과태료	7개 행위	1개 행위	- 6개
양벌형	1개 행위	4개 행위	+ 3개

□ 퇴직연금사업자 측면에서 일본은 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벌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금전적 제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은 연금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11개의 징역 또는 벌금의 병과형, 6개의 벌금형, 1개의 과태료 제재규정이 있으나, 한국은 연금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만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표 12> 퇴직연금사업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의 비교

구분	일본(②)	한국(①)	차이(①-②)
징역 또는 벌금형	11개 행위	-	- 11개
벌금형	6개 행위	-	- 6개
과태료	1개 행위	13개 행위	+ 12개
양벌형	18개 행위	-	- 18개

나. 질적 평가

□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손실 부담 행위, 특별이익 제공약속, 자료의 고의·거짓 작성, 취급 현황 미제출 등과 같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함.

○ 퇴직연금제도의 법률상 제재제도는 법률 위반시 형벌적 제재와 금전적 제재를 부여하고 있으며,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제재방식에 공통점이 있음.

- 또한, 법원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병과형을 두고, 금액을 기준으로 한 2단계의 과태료 제재방식을 취하고 있음.

- 다만, 일본의 경우 연금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형벌적 방식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과태료의 금전적 제재만이 가능한 점에 차이가 있음.

<표 13> 수탁자 책임위반 시 제재제도: 질적 비교

가입자의 보호규정	일본			한국		
	징역	벌금	과태료	징역	벌금	과태료
사업자의 손실부담 행위	●	●	-	-	-	●
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약속	●	●	-	-	-	●
사업자의 자료의 고의·거짓 작성	●	●	-	-	-	●
사업자의 취급현황 미제출	●	●	-	-	-	●

- 일본은 법률 의무자인 근로자,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이 있는 것이 큰 차이임.
 - 특히, 일본은 사용자와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 병과형의 벌칙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용자에 대한 병과형 벌칙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일본은 선택적 병과형, 벌금형, 과태료 등 3가지 방식의 벌칙규정이 존재하나, 우리나라는 병과형 및 과태료의 2가지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벌칙의 다양성이 부족함.
 - 징역형의 경우 일본은 최고 3년형에서 최저 6월형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법률위반의 경중에 따라 3단계(3년, 1년, 6월)로 처벌을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3년형에서 최저 1년형으로 2단계로 구분함.
 - 벌금형의 경우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금액기준으로 법률위반의 경중에 따라 각각 3단계로 처벌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 최고금액이 일본(300만엔) 보다 적은 상대적으로 적어(2천만원으로) 의무위반으로 인한 벌금보다 편익이 높을 수 있어 법률 의무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예방 효과가 미흡할 수 있음.
 - 일본은 독립된 벌금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독립된 벌금형이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의무사항과 법률 의무자가 있으나 의무위반이나 의무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일본의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운영에 필요한 고의적인 정보누락 및 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의무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없음.
- 또한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권리를 양도 및 담보 제공에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 이외에 과태료 등의 금전적 제재조치가 존재하지 않음.

5. 개선 과제

향후 수탁자 책임의 중요도와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확실적인 기준에서 탈피하여 차등화 및 다양화된 형태로 제재제도의 개선 및 전환이 필요함. 장기적으로는 타 법률 또는 타 국가의 제재제도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탈법 또는 위법행위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통한 퇴직연금제도의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을 실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의 입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그 이유는 계약형 지배구조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수탁자의 도덕적 의무 및 책임여부가 수급권 보장여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임.
- 또한, 우리나라의 제재제도 수준이 일본 등 주요 국가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임.
- 수탁자 책임의 중요성과 법률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한 제재제도의 차등화 필요

- 퇴직연금 자산운용과 관련된 수탁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제재규정만이 존재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탁자(사용자,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책임의 중요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어야 할 사회보장 성격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고의 또는 거짓 작성, 허위보고, 중요사항의 고의누락, 특별이익 제공약속 등의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반행위의 경중의 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는 것이 요구됨.

□ 과태료 중심의 획일적인 제재제도에서 탈피해 다양한 제재수단의 기준 마련 필요

- 현행 법률의 과태료 중심의 제재조치에서 탈피하여 징역, 벌금, 과징금, 과태료, 행정제재 등의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하여 국가의 법규범 집행이 실효성을 거두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비용 편익측면에서 수탁자가 과태료 등의 금전적 처분보다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편익이 클 경우 제재의 효율성이 반감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경제적 규모를 감안하여 금전적 제재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이행시 법적으로 강제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므로 기간 경과시 가산금 부과하는 등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타 금융관련 법률과의 형평성과 균형 있는 제재조치의 개선 필요

- 보험업법 등은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행위, 부정한 방법의 등록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 범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별이익 제공 등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규정을 두어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동일한 불법 및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제재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법률과의 종합적 비교 검토를 통한 균형 있는 제재제도 마련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선진형 제재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주요국 사례의 종합적 검토 필요

- 퇴직연금제도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고 양적인 비교를 통해 제재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법질서 환경 및 법규체제에 가장 적합한 방향

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들의 제재제도 사례비교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첨>

<표 14> 수탁자 책임위반 시 제재조치: 한국 기준

구분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	한국			일본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 유무	제재 유무
사용자	사용자의 퇴직금 기한내 지급위반	●	●	-	●	-
	사용자의 사업안의 차등 금지위반	●	●	-	●	-
	사용자의 근로자 동의위반	●	●	-	●	-
	사용자의 의견 청취 등 위반	●	●	-	●	-
	사용자의 교육실시위반	-	-	●	●	-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계약체결	-	-	●	●	-
퇴직 연금 사업자	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거부	-	-	●	●	-
	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근거 없는 판단 제공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목적 이외에 정보 이용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운용지시 정보 유출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위반	-	-	●	-	-
	연금사업자의 계약내용 준수위반	-	-	●	●	-

주 : 1) 형벌 및 금전적 제재를 대상
2) 한국의 벌칙 조항을 기준으로 일본을 비교

<표 15> 수탁자 책임위반 시 제재조치: 일본 기준

구분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	일본			한국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 유무	제재 유무
사용자	사용자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위반	●	●	-	-	-
	사용자 규약 변경시 미신고, 허위신고	-	-	●	-	-
	사용자 장부 미보존 및 허위작성	-	-	●	-	-
	사용자 기한내 미보고 및 허위보고	-	-	●	-	-
	사용자 개선명령 이행위반	-	-	●	●	-
	사용자 규약 변경 통지위반	-	-	●	-	-
	사용자 기록관리기관에 정보 미통지	-	-	●	-	-
퇴직 연금 사업자	연금사업자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	-	●	-
	운용관리업의 명의 대여금지	●	●	-	-	-
	연금사업자 추가이익보장금지	●	●	-	-	-
	연금사업자 중요사실 미고지의 부실고지	●	●	-	-	-
	연금사업자 업무정지 명령 후 업무영위행위	●	●	-	-	-
	연금사업자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	●	-	●	-
	연금사업자 보고징수 및 검사위반	●	●	-	●	-
	연금사업자 변경 신고위반	-	●	-	●	-
	연금사업자 영업소 표식 비치위반	-	●	-	-	-
	연금사업자 의무자 이외의 자가 표식 게시	-	●	-	-	-
	연금사업자 열람거부 또는 허위기재	-	●	-	-	-
	연금사업자 운영개선 명령위반	-	●	-	●	-
기타	가입자의 통지위반	-	-	●	-	-
	IRAg입자 기록관리기관에 미신고	-	-	●	-	-
	사용자·기관·가입자 기한내 미신고	-	-	●	-	-

주 : 1) 형벌 및 금전적 제재를 대상
 2) 일본의 벌칙 조항을 기준으로 한국을 비교